

「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와 「고흥군의회 회의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.

2023년 11월 21일

고 흥 군 의 회 의 장



##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1. 제안이유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(대통령령 제33639호, 2023. 7. 18. 공포, 2023. 10. 19. 시행)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
- 재직기간 5년 미만 재직공무원에게 자기계발휴가를 부여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

- 민간경력자 등의 연가 가산 재직기간 및 일수 확대(안 제18조 및 별표4)
  - 재직기간 2년 미만 2일 → 재직기간 5년 미만 3일
-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가능 규정 신설(안 제20조의5)
  -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 명시

○ 병가 운영 기준을 현행에 맞게 정비(안 제22조제3항)

- 의사진단서 첨부 기준 7일 이상 → 6일 초과

○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확대  
(별표3) 10일 → 15일

나. 재직기간 5년 미만 대상자 장기재직휴가 5일 부여(안 제24조제12항)

3. 일부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조례안 예고기간 : 2023. 11. 21. ~ 2023. 11. 26.(6일간)

5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1)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

다. 의견 제출받는 곳

1) 우편 : (59542)/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,  
고흥군의회의회장 (참조 : 의회사무과장)

2) 전화 : 061-830-5032, 팩스 : 061-830-5595

붙임 1.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. 끝.

[붙임 1]

조례 제2023- 호

##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”를 “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”로 한다.

제18조 단서 중 “2년 미만인”을 “5년 미만인”으로, “2년 미만의”를 “5년 미만의”로, “2일”을 “3일”로 한다.

제2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5(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)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제22조제3항 중 “병가일이 7일 이상일”을 “병가 일수가 연6일을 초과하는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·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· 제7조 제2항”을 “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2항 전단 중 “5년 이상 10년”을 “10년”으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“「지방공무원복무규정」 제7조제2항”을 “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별표3 및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</u></p> <p>제18조(연가일수) 공무원의 재직기간 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. 다만, 법 제27조제2항제2호·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<u>2년 미만인</u>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<u>2년 미만의</u>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<u>2일</u>을 더한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</u></p> <p>제18조(연가일수)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5년 미만인</u> ----- --- <u>5년 미만의</u> ----- ----- <u>3일</u>-----.</p> <p>제20조의5(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)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.</p>
<p>제22조(병가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<u>병가일이 7일 이상일</u>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</p> <p>제24조(특별휴가) ① ~ ⑩ (생략)</p> <p>⑪ 의장은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</p>	<p>제22조(병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병가 일수가 연6일을 초과하는</u> -----.</p> <p>제24조(특별휴가) ① ~ ⑩ (현행과 같음)</p> <p>⑪ ----- -----</p>

이 없으면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·지방 공무원 복무규정·제7조 제2항에 따르며,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.

1. 2. (생략)

⑫ 의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, 해당 재직기간 중 5일(2회 분할 가능)의 자기계발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「지방공무원복무규정」 제7조제2항에 따르며,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.

⑬ ~ ⑱ (생략)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 
----- 제7조제2항 -----  
-----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⑫ ----- 10년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「지방공무원  
복무규정」 제7조제2항 -----  
-----

⑬ ~ ⑱ (현행과 같음)

【별표 3】 (현행)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24조제1항 관련)

구 분	대 상	일수
결 혼	본인	5
	자녀	1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, 자매	1
출 산	배우자	10
입 양	본인	20
사 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
※ 비 고 : 입양은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,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

【별표 3】 (개정안)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24조제1항 관련)

구 분	대 상	일수
결 혼	본인	5
	자녀	1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, 자매	1
출 산	배우자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)	10(15)
입 양	본인	20
사 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
※ 비 고 : 입양은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,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

[별표 4] (현행)

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(제18조 관련)

1.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

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별표2(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)에서 유사 경력으로 인정되는 자(즉, 호봉확정시 인정된 유사경력)

2.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

-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
- 유사경력이 3호봉 미만으로 인정된 경우 : 1일 가산
- 유사경력이 3호봉 이상으로 인정된 경우 : 2일 가산

※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

[별표 4] (개정안)

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(제18조 관련)

1.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

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별표2(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)에서 유사 경력으로 인정되는 자(즉, 호봉확정시 인정된 유사경력)

2.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

-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
-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3일 가산

※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

[붙임 2]

##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날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